

# 재난 정신건강 연구윤리 고찰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임정숙, 백종우

## Disaster Mental Health Research Ethics Review

Jeungsuk Lim, Jong-Woo Paik

Department of Psychiatry, School of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Although disaster research participants are in a more vulnerable state than general research participants, various ethical issues to be considered in the study may be overlooked due to the special situation of disaster. Therefore, research ethics should be considered to reduce damage to study participants and maximize benefits. In add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researchers, ethical considerations should be applied in the disaster research process, so research ethics awareness should be established. In addition, at the health care institution and national level, it is necessary to prepare research ethics that reflect the Korean situation while meeting international standard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communities. In Korea, after the Ferry Sewol accident in 2014, social interest in disaster mental health increased and the National Trauma Center was established in 2018, raising the need for disaster mental health ethics guidelines. Therefore, this review aims to discuss the significance of six items: specificity of the study, prior consent and autonomy, community participation, confidentiality and feedback provision, risk minimization, and research support. So far, the experience of disaster mental health research is not sufficient in South Korea. Therefore, the current guidelines are required to be continuously revised through practical experience in the future.

**Keywords:** Disaster, Mental health, Research ethics

## 서론

과거 농경중심 사회에서의 재난은 홍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의미하였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산업화의 영향에 의한 대규모 산업재해나 운송수단 사고 등 사회적 재난도 포함되고 있다. 이처럼 재난은 사회적 특성, 문화,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재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정의하고 있다.<sup>1</sup> 재난은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절차나 지원을 통하여 관리될 수 없는 심각한 대규모의 사망자와 부상자 그리고 물리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갑작스럽게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전 세계는 지역적·국가적으로 자연 및 사회환경의 변화로 재난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대표적인 재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재난은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놓여있는 개인과 사회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코로나19 팬

데믹을 비롯한 여러 재난을 경험하면서 재난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재난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재난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재난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재난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개인과 집단,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높아지고 있어 재난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대한 연구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재난발생 현장에서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향후 발생할 재난의 피해를 줄이고 근거중심 개입을 개발하는데 핵심적인 과제이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즉, 일반적인 정신건강 연구와는 달리 재난현장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연구(이하 재난 연구라 칭한다)는 연구 계획과 수행이 재난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재난 연구 대상자들은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일반 연구 대상자보다 더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연구 참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고려해야

Submitted: 11 January 2022, Revised: 14 February 2022, Accepted: 17 February 2022

Corresponding author: Jong-Woo Paik, Department of Psychiatry, School of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23 Kyungheedaero, Dongdaemun-gu, Seoul 02453, Korea  
Tel: +82-2-958-8419, Fax: +82-2-957-1997, Email: Email: paikjw@khu.ac.kr, https://orcid.org/0000-0002-1804-8497

한다. 특히 재난적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외상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이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연구 대상자들이 일상생활을 회복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난 연구에서는 재난 연구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난현장 및 연구 대상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생명연구윤리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왔고,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를 비롯한 몇몇 기관에서는 재난 연구와 관련한 생명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재난과 관련한 생명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WHO의 산하 협회인 국제의학기구협회(The Council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edical Sciences)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의학연구에 대한 국제윤리지침에 재난상황에서의 연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고,<sup>2</sup> WHO에서는 2015년에 사스(SARS, sevier acute respiratory syndrome),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연구윤리를 제시하였다.<sup>3</sup> 또한 The Working Group on Disaster Research and Ethics에서는 개발도상국에 특화된 재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sup>4</sup> Mezincka 등<sup>5</sup>은 연구 대상자의 취약성과 윤리위원회(ethics review)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재난 상황에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재난정신건강에 대한 장기 코호트 연구와 개입에 대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정부지원으로 진행되었고, 이후 다양한 재난정신건강 관련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재난정신건강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자들의 생명연구윤리의식 확립이 강조되었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뿐 아니라 보건 의료 기관 및 국가 차원에서 지역 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하고 한국 실정이 반영된 생명연구윤리가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팀은 국가트라우마센터 용역을 받아 선행연구 고찰 및 재난정신건강 연구자 대상 델파이 조사, 국내·외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을 수행하여 재난 정신건강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생명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재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보다 실제적이고 실행가능한 윤리적 지침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 종설에서는 재난과 관련한 생명연구윤리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재난정신건강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윤리적 고려사항들을 고찰하고자 한다.<sup>6</sup>

## 본론

### 1. 연구의 특수성

재난현장에서 수행되는 정신건강 연구는 재난이 발생한 이후

에만 수행 가능한 연구를 대상으로 하며 향후에 발생할 재난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즉, 재난 연구는 재난이 아닌 환경에서 시행할 수 없거나 재난의 심각성이 줄어들 때까지 미룰 수 없는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하는 연구로, 재난 연구의 사회적 가치는 재난 상황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sup>7</sup> 물론 재난 대비의 준비단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반적인 임상연구와 동일한 조건이므로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재난 후 상황 변화에 따라 연구 참여와 관련된 위험도 빠르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 연구는 시간에 민감한 연구이다. 따라서 재난이 발생한 이후 연구시작 시점과 종결시점의 타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모든 재난 연구가 급성 단계에서부터 시행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재난 연구 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구 시점에 따라 어떠한 윤리적 문제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sup>8,9</sup>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과 집단은 취약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즉, 재난은 재난 상황에 일차적 노출에서부터 이차적 외상까지 광범위하게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재난 이후 발생한 빈곤, 신체적 손상,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폭력, 외상사건 경험 등은 취약성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sup>5</sup> 재난에 노출된 사람들은 다른 유형의 연구 대상보다 더 취약한 경향이 있다.<sup>9</sup> 따라서,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연구 대상자의 의사결정 능력, 취약한 정도, 연구의 위험성 및 이익에 대한 평가, 성별 및 문화적 규범과 전통 존중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재난 연구과정에서 연구 대상자는 물리적 피해, 법적 조치, 연구 참여에 따른 불편감,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불편감 등 직접·간접적으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재난 연구에서는 사건에 대한 회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과정에서 재외상화로 정서적 고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구 대상자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sup>9</sup>

### 2. 사전동의 및 자율성

연구윤리의 중심에는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합의가 있다. 즉, 모든 연구는 적절한 정보에 근거해서 자유롭게 사전정보에 근거해서 동의하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자발성, 자율성 및 능력의 규범을 전제하고 있다.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전동의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 대상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sup>8</sup> 즉, 연구자들은 연구 대상자들에게 사전동의를 받기 전에 연구 방법, 잠재적 위험성, 응답의 익명성, 비밀보장 등 연구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sup>9</sup>

재난 연구는 취약한 상태의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

문에 사전동의를 받는데 있어서 연구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수준인지를 고려해야 한다.<sup>10</sup> 평소 건강했던 사람일지라도 재난을 경험한 이후 신체적·행동적·인지적·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신건강 상태인지를 고려해야 한다.<sup>9</sup>

한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재난 연구의 경우에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재난으로 한쪽 또는 양쪽 부모를 잃은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sup>4</sup>

### 3. 지역사회 참여

재난 연구에 있어서 지역사회 참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몇 가지 특성으로 인해 지역사회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 첫째, 재난 연구 프로토콜이 재난 발생 후에 긴급하게 개발되기 때문에 재난 연구에 지역사회가 참여할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 둘째, 지역사회에서는 재난사건 회복 과정에서 연구협력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셋째, 비재난 연구에 비해 재난 연구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난 연구가 수행되는데 있어 사회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넷째, 통신이나 기타 인프라의 중단으로 인해 참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sup>10</sup> 이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재난 연구에 사회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사회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sup>7</sup> 지역사회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재난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서 재난 연구자들은 지역사회에 재난 연구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지역의 인구사회학적·문화적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신뢰감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sup>11</sup> 재난 상황에서는 정치적·사회적 불안정성으로 공동체와 사회경제적 구조가 악화될 수 있고,<sup>11,12</sup> 재난 상황에 따라 연구도 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난 연구자들이 재난 지역의 문화적 가치나 규범, 의사결정 구조 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sup>11</sup> 따라서 재난 연구자들은 피해 사회의 재난 이전상황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sup>10</sup> 또한 재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난 연구 참여집단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절차에 의해 선발된 지역사회대표와 의사 소통하는 것<sup>4</sup> 더불어 지역사회와 오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 시민단체나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sup>8</sup>

### 4. 기밀유지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이나 기밀유지는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전제로서, 모든 형태의 연구에서 중요하지만, 재난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취약성으로 인해 익명성과 비밀보호가 더욱 중요하게 간주된다.<sup>9</sup> 따라서 재난 연구에 있어서 연구 대상자들의 위험을 줄이고 연구 대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의 기밀유지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윤리는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 5. 위험 최소화

재난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난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에 따른 유익성이 부담이나 위험을 초과하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재난 피해자들은 재난 사건으로 인해 신체적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sup>13</sup> 그런 상황에서 연구 참여는 추가적인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고, 물리적 피해, 법적 조치, 연구 참여에 따른 불편감,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불편감 등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연구가 윤리적이거나 하더라도 재난 직후에 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재난 연구 대상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sup>9,13</sup> 이와 함께 재난 연구 과정에서 재외상화로 정서적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의 정신건강상태 확인과 정서적 고통 해결을 위한 전문가 상담 등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한다.<sup>9</sup>

한편, 최근 재난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소셜 미디어(예: Facebook, Twitter 등)를 활용할 때, 부정확한 정보를 게시한다거나 연구 대상자를 비식별하지 않는 등 소셜 미디어를 잘못 사용할 경우 연구 대상자에게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sup>9</sup> 대상자의 비식별화를 항상 고려해야 하며, 가능하면 연구 대상자 사진 사용을 피해야 한다.

### 6. 연구자 지원

재난 연구과정에서 연구자는 개인 또는 조직 내에서 불충분·실수·태만·부정직 등 정치적·법적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연구자에게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고, 개인적 신념과 충성심의 이해상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연구 주제를 다룰 때 특정 관점을 가지도록 압력을 받을 수 있다.<sup>9,13</sup> 이러한 윤리적 쟁점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검토를 통해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여야 한다.<sup>9</sup>

한편, 연구자들은 물리적으로 위험하거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지역, 또는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다. 연구자가 재난으로 인한 사망과 손상 인간의 대학살과 물리적 파괴를 목격하는 것은 연구뿐만 아니라 개인적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sup>13</sup> 따라서 재난 상황에서 연구를 수행

하는 연구자들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sup>7</sup>

## 결론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에 노출된 취약한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종설에서는 재난 정신건강 연구와 관련된 윤리적 고려사항들을 살펴봄으로써 재난 정신건강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난 연구에 있어서 윤리적 고려는 연구에 참여하는 개인과 지역사회, 그리고 연구자를 보호하는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다양한 자연·사회재난을 경험하면서 재난정신건강에 대한 연구가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에 재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었고, 재난정신건강 현장에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고 있다. 재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이 재난정신건강연구에 있어서 보다 실제적이고 실행가능한 윤리적 지침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의 충분한 피드백과 선행 연구들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적 개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국가트라우마센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며, 재난정신건강 연구자의 윤리적 민감성 향상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이해관계(CONFLICT OF INTEREST)

저자들은 이 논문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의 충돌이 없음을 명시합니다.

## 감사의 글 및 알림(ACKNOWLEDGMENTS)

이 연구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시행한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구 결과임.

## ORCID

Jeungsuk Lim  0000-0001-7829-772X

Jong-Woo Paik  0000-0002-1804-8497

## REFERENCES

1. Article 3 Subparagraph 1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ct No. 15344, (Jan. 16, 2018).
2. Council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Medical Sciences (CIOMS) with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International ethical guidelines for bio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Internet]. Geneva (Switzerland): CIOMS; 2002 [cited 2021 Dec 20]. Available from: <https://cioms.ch/publications/product/international-ethical-guidelines-for-biomedical-research-involving-human-subjects-2/>.
3.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5). Ethics in epidemics, emergencies and disasters: research, surveillance and patient care: training manual. Geneva (Switzerl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5.
4. Sumathipala A, Jafarey A, De Castro LD, Ahmad A, Marcer D, Srinivasan S, et al. Ethical issues in post-disaster clinical interventions and research: a developing world perspective. Key findings from a drafting and consensus generation meeting of the Working Group on Disaster Research and Ethics (WGDRE) 2007. *Asian Bioeth Rev* 2010;2:124-42.
5. Mezinska S, Kakuk P, Mijaljica G, Waligóra M, O'Mathúna DP. Research in disaster settings: a systematic qualitative review of ethical guidelines. *BMC Med Ethics* 2016;17:62.
6. Back JW, Kim HB, Lim JS, Youn SY, Jung JH. Development of research guideline for disaster mental health. Seoul (Korea): Kyunghee University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Foundation,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National Trauma Center; 2019.
7. Tansey CM, Anderson J, Boulanger RF, Eckenwiler L, Pringle J, Schwartz L, et al. Familiar ethical issues amplified: how members of research ethics committees describe ethical distinctions between disaster and non-disaster research. *BMC Med Ethics* 2017;18:44.
8. Chiumento A, Rahman A, Frith L, Snider L, Tol WA. Ethical standards for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research in emergencies: review of literature and current debates. *Global Health* 2017;13:8.
9. Ferreira RJ, Buttell F, Ferreira S. Ethical considerations for conducting disaster research with vulnerable populations. *J Soc Work Values Ethics* 2015;12:29-40.
10. Rosenstein DL. Decision-making capacity and disaster research. *J Trauma Stress* 2004;17:373-81.
11. Packenham JP, Rosselli R, Fothergill A, Slutsman J, Ramsey S, Hall JE, et al. Institutional Review Board preparedness for disaster research: a practical approach. *Curr Environ Health Rep* 2021;8:127-37.
12. Hunt M, Tansey CM, Anderson J, Boulanger RF, Eckenwiler L, Pringle J, et al. The challenge of timely, responsive and rigorous ethics review of disaster research: views of Research Ethics Committee Members. *PLoS One* 2016;11:e0157142.
13. O'Mathúna DP. Conducting research in the aftermath of disasters: ethical considerations. *J Evid Based Med* 2010;3:65-75.